

부 록

1.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규제 변천 추이

구분	개정일	개정 내용
보험업법 제정	1962. 1.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사업은 재경부장관의 면허 필요 • 자본금 또는 기금의 총액 5억 환 이상의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로서 그 1/2 이상을 납입해야 보험사업 가능
제1차 개정	1962. 12.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 자본금이 5억 환에서 생명보험 5천만 원, 손해보험 1억 원으로 조정
제2차 개정	1971. 1.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보험을 보험사업 범위에 포함 • 최저자본금을 인보험 2억 원, 손해보험 3억 원 이상으로 조정 • 인보험 사업자는 인보험의 재보험, 손해보험사업자는 상해보험 영위가능
제3차 개정	1977.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업법, 외국보험사업자에 관한 법률, 보험모집단속법, 대한재보험공사법을 통폐합 • 인보험사업자와 손해보험사업자의 겸영범위 확대, 재경부장관이 보험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보험 추가
제4차 개정	1980.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사업자의 증자를 제한
제5차 개정	1988.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자본금을 인보험 100억 원, 손해보험 300억 원으로 상향조정 • 보험사업의 조건부허가, 제한적 허가제도 도입 •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이와 특수 관계가 있는 자의 보험사업자 주주제한 근거 마련 • 보험사업기금제도 폐지 및 보험보증기금제도 도입 • 한국보험공사는 보험감독원으로 개편
제7차 개정	1995. 1.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사무소 설치 시 허가제도 도입 • 무허가영업 벌금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상 • 보험회사 점포의 설치, 이전, 폐쇄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 생명보험지급여력제도 도입
제8차 개정	1997. 8.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을 인보험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인상 • 신설보험회사의 설립비용 및 초기사업비의 이연상각을 제한 • 보험회사의 주주자격 제한을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집단 또는 이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의 보험사업자 주주 제한제도 2003년 3월까지 적용 • 보험사업자가 다른 법령에 의해 재경원장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사업의 업무 영위가능 근거 마련
제9차 개정	1997. 12.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사업의 허가취소 시 청문회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
제11차 개정	1998. 1.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보증기금제도의 관리운영을 예금보험공사로 이관 • 사업영위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재경원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 등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 • 금융감독위원회에 보험사업의 일부정지명령권 및 재경원장관에 허가취소요청권 부여 • 보험계약의 전부이전은 재경원장관의 인가, 일부이전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
제14차 개정	1999. 2.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보험사업자 등의 국내주재사무소 설치시 허가제 폐지 • 재경부장관의 자본금 증액, 증액제한명령권 삭제 • 임원의 자격기준제 폐지 • 외국보험사업자의 본점의 사업폐지 또는 해산 시 신고, 신고 후 사업허가의 당연효력상실 조항 삭제
제16차 개정	1999. 5.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감독기능을 재정경제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
제17차 개정	2000. 1.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사업 허가요건 등 허가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제5조의3 신설) • 보험사업 중 일부만을 영위 시 10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자본금 또는 기금제도 도입(제6조제1항)
제19차 개정 (전문개정)	2003. 5.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판매 전문 보험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일반 보험회사의 최저자본금의 2/3으로 인하(제9조제2항) • 보험회사가 부수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 •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를 변경 시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제127조, 제128조)
제20차 개정 (일부개정)	2010. 7.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회사 허가요건 중 인적 물적 요건의 아웃소싱 허용
시행령개정	2011. 1.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회사 허가요건 중 기초서류를 종목별 사업방법서로 제한(시행령 제9조)

자료: 성대규(2004), 『한국보험업법』.

2. IAIS 보험핵심원칙(진입 및 퇴출)

가. 진입규제(ICP 4. Licensing)

보험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법인은 관할구역 안에서 사업하기 전에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면허교부 요건 및 절차는 명확하고 객관적이고 공개되어 있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면허 요건

4.1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할지역은 어떤 사업체가 관할 지역에서 보험사업 실시를 인정하는 면허교부를 통해 관리한다.

4.2 보험 법령은

- 면허 교부가 필요한 규제대상인 보험사업의 정의를 포함하고
- 승인되지 않은 보험 사업을 금지하고
- 국내 보험 회사에 허용되는 법적 형태를 결정하고
- 면허를 발행하는 책임을 할당하고
- 외국 보험회사가 관할구역 내에서 보험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인정하는 절차 및 사업체의 형태를 결정해야 한다.

4.3 다음과 같은 면허교부 요건 및 절차는 명확하고, 객관적이고 공개적이어야 하며,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 신청자의 이사회 멤버, 고위 관리자, 주요 주주 및 통제기능에 종사하는 핵심경영자는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집합체로써 적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신청자가 자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 신청자가 건전한 기업 또는 그룹 구조 및 효과적인 감독을 방해하지 않는 지배구조 체계를 가지고 있다.
- 신청자가 건전한 사업계획 및 재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감독자에 대한 요건

- 4.4 보험회사가 외국의 관할구역에 지점 또는 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진출국가의 관련 감독자는 면허발급 전에 해당국가의 감독관과 협의한다.
- 4.5 보험자가 진출할 국가의 감독자의 관할지역에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국경 간 보험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진출할 국가의 관련 감독자는 그런 사업을 인가하기 전에 자국의 감독관과 협의한다.
- 4.6 감독자는 명확하게 명시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서를 심사하고 결정을 하여 신청자에게 결정을 통지한다.
- 4.7 신청자가 면허교부 요건에 충족되지 못하면 감독자는 면허를 발급을 거부한다. 감독자는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요구사항, 조건 또는 제약을 신청자에게 부과할 권한을 가진다.
- 4.8 면허가 거부되거나 조건부로 되거나 제한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 4.9 면허에는 그 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나. 대주주 등의 적격성(ICP 5. Suitability of Persons)

감독자는 보험자의 이사회 멤버, 고위 관리, 통제 기능에 종사하는 주요경영자 및 주요 주주(보험자의 주요 보유자)가 각각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성을 가지고 유지하는 것을 요구한다.

- 5.1 법령은 적격성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5.2 감독자는 이사회의 구성원, 고위관리 및 통제기능에 종사하는 주요경영자가 적격이기 위하여, 각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과 정통성(integrity)이 있다는 것을 요구해야 한다. 주요 주주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무 건전성 및 정통성이 있다는 것이 요구된다.
- 5.3 감독자는 처음과 그 이후의 감독자가 요청한 시점에서 이사회의 구성원,

고위 경영자 및 통제기능에 종사하는 주요경영자 및 주요주주의 적격성이 있다는 것을 보험자에게 요구한다. 적격성요건 및 필요한 심사 범위는 개인의 직무 및 책무에 따라 다르다.

5.4 감독자는 이사회의 구성원 고위경영자, 통제기능에 종사하는 주요 경영자 및 주요주주가 변경된 경우, 또한 이사회 멤버, 고위경영자, 통제기능에 종사하는 주요경영자 및 주요주주의 자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감독에게 통지할 것을 보험자에게 요구한다.

5.5 감독자는 이사회의 구성원, 고위경영자 및 통제기능에 종사하는 주요경영자 또는 주요주주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사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5.6 감독자는 보험회사의 이사회 멤버, 고위경영자, 통제기능에 종사하는 주요경영자 및 주요주주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지역 내외의 다른 기관과 정보를 교환한다.

다. 계약이전(ICP 6. Changes in Control and Portfolio transfer)

보험자의 중요한 소유권 또는 기타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해당사람(법인 혹은 자연인)이 단독 또는 다른 관계자와 공동으로 직·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보험회사에 관련된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는 계획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포트폴리오의 이전 또는 보험회사의 합병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주요 소유자와 통제

6.1 보험자에 관련된 “지배권”은 법령에 의해 정의되어야 하며 최소한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 보험자나 중간 또는 최종 소유자의 발행 주식 또는 금융상품(강제전환 사채 등)에 대해 일정기준치를 초과한 특정수량 또는 비율을 소유하는 것

- 전술의 주식 또는 금융상품에 부수하는 의결권
 - 이사회 및 기타 집행위원회의 이사 임명권 또는 해임권
- 6.2 감독자는 보험자 대해 일체의 지배권취득 또는 변경에 관하여 통지하는 것을 요구한다. 감독자는 단독 또는 다른 관계자와 공동으로 직·간접을 불문하고 보험자에게 관련된 중요한 소유권 또는 경영지배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 (법인 혹은 자연인)에 대해 인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6.3 감독자는 해당사람(법인 혹은 자연인)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주식에 대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취득한 여부에 관계없이 미리 설정된 지배수준을 넘는 중요한 증가에 대해 인가한다. 이것은 해당 보험회사 또는 그 중간 또는 최종소유자의 기타지분에도 적용된다. 미리 설정된 일정한 지배수준을 밑도는 중요한 감소가 생긴 경우 감독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적절한 통지를 한다.
- 6.4 위 기준 6.2 및 6.3에서 정한 요건은 보험회사의 중간 또는 최종소유자가 당해 보험회사의 설립 관할구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그 지배권의 취득 또는 변경에 적용된다. 이 경우 감독자는 그것이 적절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인에 대한 감독자와 협력한다.
- 6.5 감독자는 지배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새로운 면허교부를 받고자 하는 시점에서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 6.6 감독자는 보험자에 대해 보험자의 주주, 기타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일체의 사람에 대해 적절한 정보제공을 요청한다.
- 6.7 감독자는 보험회사의 지배권을 취득하려고 예정소유자가 소유함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손상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득신청을 기각한다. 감독자는 의도하는 실질적인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6.8 보험회사의 지배권의 취득 또는 변경계획 신청을 평가하기 위해 감독자는 재정 및 금융 이외의 자원에 관한 요건을 설정한다.
- 6.9 상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의 변경은 감독자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감독자는 허가하기 전에 해당회사의 새로운 정관 또는 조직의 지배 구조에 관한 문서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포트폴리오 이전

6.10 보험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은 특히 양수인 및 양도인의 재무상태를 고려하면서 감독자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감독자는 양수인 및 양도인 양자의 보험 계약자의 이익이 보호되는 것을 확인한다.

라. 퇴출규제(ICP 12. Winding-up and Exit from the Market Licensing)

법령은 보험 법인이 시장에서 철수하는 일련의 선택사항을 정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법률은 경영파산을 정의하고 보험법인의 경영파산을 처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 보험법인의 청산절차의 경우 법적 구조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우선하고 보험계약자에 대한 이익제공이 적시에 되지 못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12.1 보험자의 청산과 시장에서 철수 절차는 법률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다. 법령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 및 자격보호 우선권은 상위에 규정된다. 철수절차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이익의 적시 제공이 두절되는 것의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12.2 법령은 보험자의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시점을 결정하기 위한 판단근거를 규정해야 한다.